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돼야 낙농진흥법의 발전은



김남용
본회 회장

낙농진흥법이 제정된지 30년만에, 개정을 거른한지 근 20년만에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7월 30일 개정되었다.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개방을 앞두고 개방에 대처하기 위함이었으나 일부계층의 반대로 개방이 다 된 후,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이 수입유제품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밀려드는 유제품을 막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시기를 실기한 것이다. 수입을 제동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한 개정이었으나 수입에 대한 제동장치 하나 만들지 못하고 쏟아져들어오는 유제품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태에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었다.

홍수를 대비하지 못하여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흙탕물이 논과 밭으로 밀려드는 광경을 보고 한숨만 쉬는 그런 상태,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낙농상황이다.

그러나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었으니 이제부터 터진 제방을 막는 격인데 안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장치들을 다지고 다져야 한다. 여기에 낙농관련 모든 사람들의 중지가 집약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낙농산업보다 눈 앞의 자기들의 조그만 이익에 집착하고들 있는데 모두가 마음을 비워 우리나라의 낙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낙농진흥법이 낙농관련 유일한 법이다. 그러므로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관심이 집중됨은 당연하다.

낙농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고 낙농위원회의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집유일원화 방안, 원유의 계약 생산 및 계약판매 방안, 원유가격 결정 방안, 원유검사 공영화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축산물가공업무가 농림부로 환원 일원화되면 문제는 없지만 현 상황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농림부와 유업체와의 연

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농림부의 조치들이 유업체에 먹혀들지 않으면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에 대비하는 여유도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한우산업을 존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우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만족할만한 대책이 못된다는 평도 있으나 정부에서는 한우산업 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종합대책에도 있지만 송아지 생산안정제도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도는 축산법내에 규정하여 놓았다.

이 재원은 축산진흥기금.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생산자들의 참여로 각기 10%범위내에서 출연하여 기금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축산진흥기금의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호응도, 축산여건이 어려운 상태하에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소사육농가들이 출연하겠느냐는 것이다. 즉 안정기금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금의 조성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쇠고기수입에 따른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 시켜서 그 관세로 안정제 기금화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도에서도 쇠고기의 수입개방과 동시에 관세를 목적세로 하여 송아지가격 지지 기금화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얻어지는 관세를 송아지 생산안정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 2001년이면 쇠고기, 그리고 생축이 개방된다.

축산진흥기금 조달원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자금의 고갈로 축산업에 지원될 뜻이 대폭 축소될 것이 예견된다. 다른 나라와 같이 한국마사회를 역시 농림부로 그 관할권을 이양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의 이익금을 축산진흥기금화하여야 한다.

사실 한국마사회도 농림부 관할권에 있었는데 6공시절 당시 실세들의 농간으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되었다. 이관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이관하였었다. 강권과 부조리에 의한 업무의 조정은 원상태로 환원되어야 한다. 쇠고기 수입관세가 그리고 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는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장치들을
만들고 다져야 한다.
여기에 낙농관련
모든 사람들의
중지가 집약되어야 한다.

국마사회의 수입금이 고스란히 축산진흥기금화 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보다 더 발전하리라고 본다.

낙농육우산업, 즉 소산업은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산업이 자취를 감추게 되면 일반작물산업도 붕괴될 것이며 농촌도 따라서 붕괴된다. 낙농육우산업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둑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소산업은 아직도 부업으로의 시작이 가능하다. 또 농촌에 기계화가 많이 되었지만 산간 오지에서는 아직도 이 한우가 경작, 그리고 운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이 한우는 생산비 개념이 없이 길러지고 있으므로 경쟁력도 있다고 본다. 단지 산간 오지에서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이 젊은층이 아니라는 점, 일반농사와 복합경영을 하고 있어 일반농사가 계속되지 않으면 한우사육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들이 문제점이나 한우, 그리고 번식을 하는 한우는 이와같은 부업형태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한우산업을 지키는 길은 번식농가를 계속 유지시키는 길이며 번식농가를 계속 유지하자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가 속히 정착하고 또 이 기금이 축적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산업을 유지발전 시키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소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사육농민이 그리고 소산업에 관련된 인사들이 산업에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사육농가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소값의 폭락, 우유의 품질, 안정성 문제, 쇠고기의 위생 문제 등으로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다.

우유의 잉여시 항상 따르는 우유값 지불조건, 원유값과 연결되어 있는 원유의 품질조작문제 등이 대두되어 생산자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우수한 품질, 안정성 있는 우유와 쇠고기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가 하나 둘씩 정비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소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뿌리를 박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⑩

우리나라의 소산업을
유지발전 시키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소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사육농민이
그리고 소산업에 관련된
인사들이 산업에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